

서울고등법원 2020. 6. 12 선고 2019나20487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6. 12 선고 2019나204872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가합54089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정재윤

피고, 피항소인1. B종회

2. C종회

3. D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4. E

5. F

6. G

7. H

피고 1, 3, 7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홍준호, 홍인

변론 종결2020. 4. 3.

판결 선고2020. 6. 12.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가합540891 판결

주 문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I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하남시 J 임야 203,277m²에 관하여, 피고 B종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9. 4. 9. 접수 제7161호로 마친 1/2 지분 중 160303/40655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종회는 같은 등기소 2009. 4. 9. 접수 제7161호로 마친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는 같은 등기소 2009. 4. 9. 접수 제7161호로 마친 1/2 지분 중 21487/20327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5. 4. 15. 접수 제15758호로 마친 21487/20327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E, F은 같은 등기소 2015. 6. 26. 접수 제25954호로 마친 피고 D 명의의 21487/203277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F, E, G은 같은 등기소 2015. 7. 30. 접수 제29716호로 마친 피고 D의 21487/203277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H은 같은 등기소 2017. 8. 30. 접수 제30162호로 마친 피고 D 명의의 21487/203277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총회의 종원 114명이 2020. 1. 13. 소집권자인 Y가 소집한 원고 총회의 대통합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는데, Y가 그들의 참석을 거부한 채 소집장소인 AG의 문을 잠근 채 도망하자, 종원들이 Y에게 회의진행을 요청한 후 임시 사회자를 정하여 총회를 진행하여 I을 원고 총회의 회장으로 선출함과 아울러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총회의 대표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판단

- 1) 일단 원고 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인 Y가 일시를 "2020. 1. 13. 14:00", 장소를 "진주시 AF, 학산재"로 하여 "2020년도 대통합임시총회"를 소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33호증부터 제3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2) 그러나 갑 제52호증부터 제63호증까지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더라도, ① 임시총회 소집일시 무렵 총회개최 장소인 AG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원고 총회의 종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② 그들 다수가 소집일시 무렵 AG 앞에 집결한 이후 Y에 대한 항의와 일부 몸싸움 등 소란 상황에서 Y가 다른 장소로 잠시 피신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Y가 부당하게 총회 참석을 거부한 채 귀가하였다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피고 측은, 원고 총회의 종원들이 당초의 소집일시가 다소 지난 15:00경 AG 내부에서 총회를 진행하여 적법한 결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그 회의록 등 자료(을 제36, 37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총회 결의는 AG 외부의 도로에서 그곳에 집결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결의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주재되고 당초의 소집장소가 그곳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총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용빈

판사박재영

판사이정훈